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487

2021년 6월 18일
교 육 위 원 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5월 28일, 황인구 의원

2.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상정일자

○ 제30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6월 18일 상정, 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황인구 의원)

1. 제안이유

○ 지구온난화와 환경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확대되고,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의식과 일상의 생태적 전환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기

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 보장, 환경·생태 보존 등에 관한 가치관 함양 등에 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마.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와 용도, 기금의 존속기한 및 운용·관리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4조~제18조)

사.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9조)

아.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0조)

자. 각 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일정 시수 이상 생태전환교육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21조)

차. 생태전환교육 관련 사무의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22조)

카.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에 관해 규정함(안 제23조)

타. 생태전환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공적이 큰 학교나 단체 등의 포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24조~제2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5월 28일 황인구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487호로 발의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태에 대한 의식과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1]' 를 195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전 세계는 이를 계기로 지구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과 관련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 환경부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20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

1)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는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여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음.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한바 있습니다.[2)]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국내 교육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생태전환교육 중장기(`20~`24)발전계획' 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구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과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생태전환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접목,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전환교육 시행,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 환경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1] 2021년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추진 계획

생태문명을 지향하는 학교 교육과정 전환	생태시민을 육성하는 네트워크 전환	생태행동을 실천하는 조직문화 전환
◦ 생태전환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교육계획 수립	◦ 미래 세대를 지켜주는 '교사행동 365'	◦ 탄소배출을 줄이는 학교 문화 조성
◦ 생태소양을 함양하는 생태전환교육 운영	◦ 미래 세대가 실천하는 '학생행동 365'	◦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활 습관화
◦ 생태전환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및 교원 역량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부모·시민행동 365'	◦ 지속가능한 학교 생태환경 구축

○ 이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에 관한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기존 환경보호 수준에 머물렀던 학교 환경교육

---

2) 환경부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1.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 산업(화석연료→전기·수소), 수송(내연기관→친환경차), 건물(도시가스→전기화)
2.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 (산업)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수송)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차(교통사고↓, 효율↑), 드론택배
   (건물) 기존 건물 → 그린리모델링, 신규 건물 → 제로에너지빌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고효율 가전기기
3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미래기술 : 철강→수소환원제철 / 석유화학→혁신소재, 바이오플라스틱 / 전력→CCUS
4.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 원료의 재활용·재사용(철스크랩, 폐플라스틱, 폐콘크리트) 극대화, 에너지 투입 최소화
5.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
   * 유휴토지(갯벌, 습지, 도시숲) 신규조림 확대, 산림경영 촉진(산림연령↓, 목재이용↑)

을 지구 생태보호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으로 확장하고 있는 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에서 기존 '학교환경교육'의 용어를 '생태전환교육'으로 정비하고,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및 센터 설치, 생태전환교육과정 운영 및 위탁, 교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시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을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 등(안 제6조~안 제9조),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등(안 제11조~안 제18조),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 및 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9조, 안 제20조),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및 위탁(안 제21조, 안 제22조), 교원 연수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안 제23조, 안 제24조), 포상(안 제25조) 등을 규정하여 총 2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등에 대한 검토(안 제10조~ 안제18조)

○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생태전환교육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및 용도,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

니다.

○ 동 조항은 중·장기 사업으로 추진해야하는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해외 주요국 중 지구 기후위기 및 환경재난 극복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환경교육법에 기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1990년에 국가환경교육법(NEEA)이 제정되어 환경보호청(EPA)내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환경교육국(OEE)이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환경보호청(EPA)이 환경교육에 대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만에서는 환경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환경보호기금의 5%, 환경 위반 벌금의 5%, 폐기물 회수 소득 중 10% 등을 환경교육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3].

○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환경교육 방향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교육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과 관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한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안정적인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생태전환교육기금과 관련하여 아직 기금의 규모나 재원의 출처, 연도별 기금조성 목표액 및 집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 및 세계 기후변화 정책의 기조, 세계주요 국가 및 중앙정부의 사례 등을 폭 넓게 검토하여 기금조성 및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3) 환경부(2018). 주요 외국의 환경교육 비교 연구.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수정안의 요지 : 없음.

Ⅶ.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Ⅸ.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생태전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식과 일상의 생태적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전환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과 생태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의 가치와 기본 이념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학교 운영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전환교육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생태전환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
2.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
3. 생태전환교육 수행을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교직원과 학생 등의 생태소양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 방안
5.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6.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평가
7.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 (생태전환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서 규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생태전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활동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
5. 생태전환교육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태전환교육 추진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환경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설치) 교육청은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지

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생태전환교육 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생태전환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활동의 지원

제12조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생태전환교육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태전환교육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생태전환교육이나 환경교육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태전환교육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내실화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생태전환교육 전담부서는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교육 활동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20조 (생태전환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생태전환교육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태전환교육 관련 지도자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생태전환교육 관련 학습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3. 생태전환교육 교원 연수 지원
4. 생태전환교육에 대한 평가·연구
5. 그 밖의 생태전환교육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생태전환교육의 시행)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생태전환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생태전환교육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 (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생태전환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